

#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36호
----------	--------

제출년월일 2024. 11. .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민선8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 핵심사업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 지방자치단체 실·국 설치 자율화에 따른 기구 조정을 통해 권한을 배분하고 조직관리의 유연성 및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실·국 설치 기준 개정에 따른 “국” 신설 및 권한 배분
- 기 기구체계 변경(2국 3과 4팀 증) / 자치행정국, 미래전략국 신설
  - 본청 : 1실 6국 4담당관 40과(200팀) → 1실 8국 3담당관 45과(208팀)
  - 사업소 : 3개소 7과(26팀) → 2개소 6과(22팀)
- 나. 정원 증원 및 직급·직렬 조정
- 원활한 조직개편 및 기준인력 반영을 위한 정원 증원(+62명)
  - 고충민원 및 업무량 과다 등 격무 부서 정원 조정
- 다. 사업의 목적 및 방향성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사업소 명칭 변경
- 맑은물사업소, 클린도시사업소 → 맑은물사업본부, 공원도시사업본부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10. 29. ~ 11. 8. (1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있음(붙임)
  -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나) 경 기 도 : 기획담당관

#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안전기획관, 홍보기획관, 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안전담당관”을 “안전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미래전략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스마트도시과를 둔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의회 협력, 인구정책, 미래정책, 성과관리, 법제, 통계, 규제개혁, 소송 등”을 “조직, 성과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투자분석·유치”를 “의회 협력, 법제, 소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안제도, 적극행정, 규제개혁, 일몰, 군·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정보화, 정보보호, 전산시스템·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계획,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운영,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6. CCTV 구축 협의 및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앞의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의 “제1절 보건소”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의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삭제한다.

제21조 앞의 “제5장 하부행정기관”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의 “제4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24조 앞의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을 삭제한다.

제26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4조를 제26조로 하며, 제22조를 제24조로 하고, 제

20조를 제22조로 하며,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27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5조를 제27조로 하며, 제23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1조를 제23조로 하며,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7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5조로 하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자산관리과,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 복무, 공인 및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
2. 후생 노무, 공무원 운영, 인사, 채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자치행정, 지방분권, 행정구역, 선거, 주민자치, 대외협력, 민간협력, 자원봉사,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 결산, 계약, 관용차량, 자산관리,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관리, 기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6. 민원, 여권, 가족관계, 민원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미래전략국) ① 미래전략국에 미래전략과, 미래도시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철도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미래정책, 인구정책, 신야간정책, 통계, 공공데이터 전략정책 수립, 빅데이터 분석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지구, 역세권, 특화사업,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등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 도시재생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4. 철도행정, 철도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중전의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제8조(중전의 제6조) 제2항제1호 중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 경제정책, 청년정

책, 사회적경제”를 “일자리정책 및 사업, 노사민정, 청년정책, 외국인고용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을 “운영, 사회적경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기업지원, 공장관리”를 “투자분석·유치”로 한다.

### 3. 기업지원, 기업SOS, 공장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교육지원과, 도서관과”를 “교육청소년과”로, “체육과”를 “체육과, 도서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미래교육 지원”을 “교육자치, 교육협력,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복지과”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로, “아동보육과, 민원여권과”를 “아동보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묘지, 매장·화장,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를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노인시설, 묘지, 매장·화장, 장애인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년, 상호문화 및 외국인 정책”을 “가족지원, 상호문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보육정책, 보육지원”을 “아동돌봄 및 아동보호, 보육정책, 보육지원, 보육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 1. 복지정책의 기획, 보훈, 통합돌봄, 생활보장, 의료급여, 통합조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연환경, 생태수질총량, 생활환경안전, 환경 인허가”를 “환경정책, 수질총량, 환경안전, 환경인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하천관리, 친수공간 조성”을 “친수공간 조성, 하천관리, 해강안”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도로관리과, 철도과”를 “도로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통정책”을 “교통물류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를 “도시계획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군부대 협의” 를 “도시개발, 군사시설보호구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한다.

3. 건축관리, 건축지도, 건축안전센터 운영, 청사건립, 공공시설 건축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토지정보 및 지적, 주소정보, 지적재조사,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장 직속기관

제1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절 보건소

제17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7조(중전의 제15조)제2항 중 “농정과” 를 “농업정책과” 로 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 사업소

제20조(중전의 제18조) 제2항제1호 중 “맑은물사업소:” 를 “맑은물사업본부:”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원도시사업본부: 공원과, 산림과, 클린도시과

제21조(중전의 제19조) 중 “소장 또는 센터장을 두며, 소장(센터장)” 을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 으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맑은물사업소” 를 “맑은물사업본부”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클린도시사업소” 를 “공원도시사업본부” 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청소 및 폐기물(가로청소)” 을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 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공원조성, 도시녹화 및 산지이용” 을 “청소 및 폐기물(가로청

소)” 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공원 관리 일체” 를 “청소범위 중첩 및 제외지역 조정” 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나. 도시녹화 및 산림휴양, 산림보호 등에 관한 사항

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6조(종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39명” 을 “1,70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604명” 을 “1,666명” 으로 한다.

별표 1 중 “(제12조 관련)” 을 “(제14조 관련)” 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제25조제1항 관련)” 을 “(제27조제1항 관련)” 으로 한다.

별표 4 중 “(제25조제2항 관련)” 을 “(제27조제2항 관련)” 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미래전략국장” 으로, “기획정책과장” 을 “정책기획과장” 으로 한다.

②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미래전략국장” 으로, “기획정책과장” 을 “정책기획과장” 으로 한다.

③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7조 중 “기획정책과장” 을 “정책기획과장” 으로 한다.

④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을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국장, 경제국장” 으로 하고, 제10조 중 “예산과장” 을 “투자유치과장” 으로 한다.

⑤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으로, “기획정책과장” 을 “정책기획과장” 으로 한다.

⑥ 김포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정책과장” 을 “정책기획과장” 으로 한다.

⑦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지원과장” 을 “교육청소년과장” 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 을 “교육청소년과장” 으로 한다.

⑧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 을 “미래전략국장, 도시주택국장” 으로 한다.

⑨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6조제2항 중 “클린도시사업소장” 을 “공원도시사업본부장” 으로 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총무과장 황 규 만
	팀 장 직위·성명	조직팀장 유 승 민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한 지 혜(☎2100)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맑은물사업본부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공원도시사업본부	김포시 초당로 40(장기동)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8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701	-				
정무직	소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소 계	1,660	-				
	2급	1	1				
	3·4급	1	1				
	4급	12	8	1	1	2	
	5급	76	45	2	8	7	14
	6급 이하	1,567	-				
	전문경력관	3	-				
별정직	소 계	6	-				
	5급 상당	1	-				
	6급상당 이하	5	-				
연구직	소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소 계	32	-				
	지도관	5			5		
	지도사	27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보좌기관) ① <u>부시장 밑에 안전 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u></p> <p>② <u>보좌기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u></p> <p>1. <u>안전담당관은</u> 중대시민재해, 산업재해, 사회·자연재난, 안전점검, 민방위에 관한 사항</p> <p>2. <u>홍보담당관은</u> 시정 홍보, 시보 발행 및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p> <p>3. <u>감사담당관은</u> 공무원의 윤리, 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p> <p>4. <u>정보통신담당관은</u> 정보화, 정보보호, 전산시스템·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p>	<p>제3조(보좌기관) ① ----- <u>안전 기획관, 홍보기획관, 감사관</u>----- -----.</p> <p>② -----.</p> <p>1. <u>안전기획관</u>----- ----- -----</p> <p>2. <u>홍보기획관</u>----- -----</p> <p>3. <u>감사관</u>----- -----</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제4조(실·국의 설치) <u>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청에 기획조정실, 경제국, 교육문화국, 복지국, 환경국,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을 둔다.</u></p>	<p>제4조(실·국의 설치) ----- ----- <u>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미래전략국</u>----- -----.</p>
<p>제5조(기획조정실) ① <u>기획조정실에 기획정책과, 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공공건축과를 둔다.</u></p> <p>② <u>기획조정실장은</u>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제5조(기획조정실) ① <u>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스마트도시과를 둔다.</u></p> <p>② -----.</p>

1. 시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의회 협력, 인구정책, 미래정책, 성과관리, 법제, 통계, 규제개혁, 소송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2. 예산편성 및 집행, 투자분석·유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복무, 공인 및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

4. 후생 노무, 공무원 운영, 인사, 채용 및 교육,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치행정, 지방분권, 행정구역, 선거,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 민간협력, 자원봉사,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관한 사항

7. 지출, 결산, 계약, 관용차량, 자산관리,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청사 건립, 공공시설 건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 ----- 조직, 성과관리-----  
-----

2. 제안제도, 적극행정, 규제개혁, 일몰, 군·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 의회 협력, 법제, 소송-----  
-----

<삭 제>

4. 정보화, 정보보호, 전산시스템·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계획,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운영,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6. CCTV 구축 협의 및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자산관리과,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신 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 복무, 공인 및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
2. 후생 노무, 공무원 운영, 인사, 채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자치행정, 지방분권, 행정구역, 선거, 주민자치, 대외협력, 민간협력, 자원봉사,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 결산, 계약, 관용차량, 자산 관리,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 관리, 기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6. 민원, 여권, 가족관계, 민원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미래전략국) ① 미래전략국에 미래전략과, 미래도시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철도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미래정책, 인구정책, 신야간정책, 통계, 공공데이터 전략정책 수립, 빅데이터 분석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지구, 역세권, 특화사업,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등 개발 및

제6조(경제국) ① 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 경제정책, 청년정책,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3. 기업지원, 공장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기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7조(교육문화국) ① 교육문화국에 교육지원과, 도서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 도시재생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4. 철도행정, 철도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국) ① 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② -----.

1. 일자리정책 및 사업, 노사민정, 청년정책, 외국인고용지원 -----  
---

2. -----  
--- 운영, 사회적경제 ---

3. 기업지원, 기업SOS, 공장관리에 관한 사항

4. 투자분석·유치-----  
-----

<삭 제>

5.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문화국) ① -----  
교육청소년과-----  
----- 체육과, 도서관과-----.

② -----  
-----.

1. 교육정책 및 미래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생략)
3.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진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신설>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문화과, 아동보육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의 기획, 조사 및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묘지, 매장· 화장,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 청소년, 상호문화 및 외국인정책, 반려문화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보육정책, 보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민원, 여권, 가족관계, 민원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9조(환경국) ① 환경국에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

1. ----- 교육자치, 교육협력, 청소년 -----

2. (현행과 같음)

<삭제>

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6.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복지국) ①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보육과-----.

② -----.

1. 복지정책의 기획, 보존, 통합돌봄, 생활보장, 의료급여, 통합조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노인시설, 묘지, 매장· 화장, 장애인시설-----
3. --- 가족지원, 상호문화-----
4. 아동돌봄 및 아동보호, 보육정책, 보육지원, 보육시설 -----

<삭제>

제11조(환경국) ① ----- 환경정책과-----

과, 해양하천과를 둔다.

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연환경, 생태수질총량, 생활환경안전, 환경 인허가, 환경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5. 하천정책, 하천관리, 친수공간 조성, 철책제거, 방재시설 등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10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과, 대중교통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철도과, 차량등록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정책, 교통시설, 주차시설, 주차질서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5. 철도행정, 철도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11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종합허가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

-----.

② -----.

1. 환경정책, 수질총량, 환경안전, 환경인허가-----

-----

2. ~ 4. (현행과 같음)

5. ----- 친수공간 조성, 하천관리, 해강안 -----

--

6. (현행과 같음)

제12조(교통건설국) ① -----  
교통정책과----- 도  
로관리과-----

-.

② -----

-----.

1. 교통물류정책-----

2. ~ 4.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3조(도시주택국) ① -----  
도시계획과-----

-----

-----.

② -----

장한다.

1. 도시계획, 군부대 협의, 지구단위 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도시재생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지구, 역세권, 특화사업,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등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생략)

<신설>

<신설>

5. 건축관리, 건축지도, 건축안전센터 운영,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6. 토지정보 및 지적에 관한 사항

7. (생략)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신설>

<신설>

제12조 ~ 제14조 (생략)

제2절 농업기술센터

<신설>

제15조(설치) ① (생략)

-----.

1. -----도시개발, 군사시설보호 구역-----

<삭제>

<삭제>

2. (현행 제4호와 같음)

3. 건축관리, 건축지도, 건축안전센터 운영, 청사건립, 공공시설 건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토지정보 및 지적, 주소정보, 지적 재조사,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5. (현행 제7호와 같음)

<삭제>

<삭제>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7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③ (생략)

제16조·제17조 (생략)

제4장 사업소

<신설>

제18조(설치) ① (생략)

②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2.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과
3. 도시안전정보센터

③ (생략)

제19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센터장을 두며, 소장(센터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사무) 사업소의 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소  
가. ~ 아. (생략)
2. 클린도시사업소  
가. 청소 및 폐기물(가로청소)에 관한 사항

② ----- 농업정책과-----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제19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삭제>

제4장 사업소

제20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맑은물사업본부: -----  
--

2. 공원도시사업본부: 공원과, 산림과, 클린도시과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업소의 장) -----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  
-----  
-----.

제22조(사무) -----  
-----.

1. 맑은물사업본부  
가. ~ 아. (현행과 같음)

2. 공원도시사업본부  
가.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  
-----

나. 옥외광고물 허가 및 지도·단  
속에 관한 사항

다. 공원조성, 도시녹화 및 산지이  
용에 관한 사항

라. 산림보호, 산림휴양 및 경제림  
조성에 등 관한 사항

마. 공원 관리 일체에 관한 사항

바. 청소범위 중첩 및 제외지역 조  
정에 관한 사항

3. 도시안전정보센터

가. 스마트도시계획 및 공공데이  
터 전략정책 수립

나. 빅데이터 분석사업 발굴 및 추  
진에 관한 사항

다. CCTV 구축 협의 및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및 버  
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운영  
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

<신 설>

제21조 ~ 제23조 (생 략)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신 설>

제24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  
무원 정원의 총수는 1,639명으로 다

나. 도시녹화 및 산림휴양, 산림보  
호 등에 관한 사항

다. 청소 및 폐기물(가로청소)-----  
-----

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지도·단  
속에 관한 사항

마. 청소범위 중첩 및 제외지역 조  
정-----

<삭 제>

<삭 제>

<삭 제>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23조 ~ 제25조 (현행 제21조부터 제  
23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6조(정원의 총수) -----  
----- 1,701명-----

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604명
2. (생략)

제25조 ~ 제27조 (생략)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제12조 관련)  
표 (생략)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8조 관련)

명칭	위치	비고
맑은물사업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클린도시사업소	김포시 초당로 40(장기동)	
도시안전정보센터	김포시 김포한강3로 326(장기동)	

[별표 3]

김포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표 (생략)

[별표 4]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 3. (생략)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6조 관련)

-----.

1. ----- 1,666명
2. (현행과 같음)

제27조 ~ 제29조 (현행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제14조 관련)  
표 (현행과 같음)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명칭	위치	비고
맑은물사업본부	-----	
공원도시사업본부	-----	
〈삭제〉		

[별표 3]

김포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표 (현행과 같음)

[별표 4]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8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b>1,639</b>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일반직	소계	<b>1,600</b>	-			
	2급	1	1			
	3·4급	1	1			
	4급	<b>10</b>	<b>6</b>	1	1	2
	5급	<b>75</b>	<b>44</b>	2	8	7
	6급 이하	<b>1,510</b>	-			
	전문경력관	3	-			
별정직	소계	6	-			
	5급 상당	1	-			
	6급상당 이하	5	-			
연구직	소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소계	<b>30</b>	-			
	지도관	<b>3</b>		<b>3</b>		
	지도사	27	-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b>1,701</b>	-				
정무직	소계	--	-			
	시장	--	--			
일반직	소계	<b>1,660</b>	-			
	2급	--	--			
	3·4급	--	--			
	4급	<b>12</b>	<b>8</b>	--	--	--
	5급	<b>76</b>	<b>45</b>	--	--	--
	6급 이하	<b>1,567</b>	--			
	전문경력관	--	--			
별정직	소계	--	--			
	5급 상당	--	--			
	6급상당 이하	--	--			
연구직	소계	--	--			
	연구관	--				
	연구사	--	--			
지도직	소계	<b>32</b>	--			
	지도관	<b>5</b>		<b>5</b>		
	지도사	--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2. 20., 2024. 3. 29.>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2024. 1. 16.>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김포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안전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

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담당관은 중대시민재해, 산업재해, 사회·자연재난, 안전점검,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홍보담당관은 시정 홍보, 시보 발행 및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윤리, 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화, 정보보호, 전산시스템·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청에 기획조정실, 경제국, 교육문화국, 복지국, 환경국,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제5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정책과, 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공공건축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의회 협력, 인구정책, 미래정책, 성과관리, 법제, 통계, 규제 개혁, 소송 등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집행, 투자분석·유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복무, 공인 및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
4. 후생 노무, 공무원 운영, 인사, 채용 및 교육,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치행정, 지방분권, 행정구역, 선거,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 민간협력, 자원봉사,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관한 사항
7. 지출, 결산, 계약, 관용차량, 자산관리,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청사 건립, 공공시설 건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국)** ① 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 경제정책, 청년정책,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 공장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기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식품안전, 위생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문화국)** ① 교육문화국에 교육지원과, 도서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정책 및 미래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진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화, 예술, 문화유산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 관광사업, 관광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문화과, 아동보육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의 기획, 조사 및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묘지, 매장·화장,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 청소년, 상호문화 및 외국인 정책, 반려문화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보육정책, 보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민원, 여권, 가족관계, 민원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9조(환경국)** ① 환경국에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해양하천과를 둔다.

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연환경, 생태수질총량, 생활환경안전, 환경 인허가, 환경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정책, 에너지산업, 미세먼지, 비산먼지, 소음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환경지도 및 단속, 환경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자원재활용, 음식물류, 자동집하시설, 소각장,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등에 관한 사항
5. 하천정책, 하천관리, 친수공간 조성, 철책제거, 방재시설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어항, 어촌뉴딜, 무인도서, 공유수면, 내수면, 어업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과, 대중교통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철도과, 차량등록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정책, 교통시설, 주차시설, 주차질서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개선, 버스 정책, 마을버스, 택시화물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도로 건설 및 토지 보상, 마을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점용, 도로보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등에 관한 사항
5. 철도행정, 철도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검사, 의무보험, 자동차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종합허가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 군부대 협의, 지구단위 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도시재생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지구, 역세권, 특화사업,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등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승인, 공동주택 감사 및 관리,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건축관리, 건축지도, 건축안전센터운영,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6. 토지정보 및 지적에 관한 사항
7. 개발행위,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 공장설립 허가에 관한 사항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보건소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보건소를 두고,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지소를 두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사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5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③ 농업기술센터는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에 둔다.

**제16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 농지관리, 농업지원 및 유통,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산, 가축방역 및 동물위생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4.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품종 육성 및 연구

5. 농업단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기술 등 교육훈련
6. 과학적 영농기술 보급 및 농기계 관련 교육
7. 농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 지도
8.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 제4장 사업소

**제18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2.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과
3. 도시안전정보센터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9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센터장을 두며, 소장(센터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사무)** 사업소의 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맑은물사업소

- 가. 상하수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나.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 다.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
- 라.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 마. 정수시설(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운영 및 관리
- 바. 원·정수 수질관리 및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
- 사. 지하수 이용신고 등 지하수 관리
- 아. 오수, 분뇨(가축포함)처리 등에 관한 사항

##### 2. 클린도시사업소

- 가. 청소 및 폐기물(가로청소)에 관한 사항
- 나. 옥외광고물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다. 공원조성, 도시녹화 및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
- 라. 산림보호, 산림휴양 및 경제림 조성에 등 관한 사항
- 마. 공원 관리 일체에 관한 사항
- 바. 청소범위 중첩 및 제외지역 조정에 관한 사항

##### 3. 도시안전정보센터

- 가. 스마트도시계획 및 공공데이터 전략정책 수립
- 나. 빅데이터 분석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다. CCTV 구축 협의 및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21조(읍·면·동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행정 동·리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읍·면·동장 등) ① 읍에는 읍장을, 면에는 면장을,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에 부읍장·부면장을 둔다.

제23조(사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리·반 운영, 주민등록업무,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민원서류 발급, 사회복지, 주민자치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4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639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60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5명

제25조(정원채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6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김포시 보건소	김포시 사우중로 108(사우동) ※ 북부보건센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김포시 일원
통진읍보건지소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통진읍 일원
고촌읍보건지소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14	고촌읍 일원
양촌읍보건지소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68번길 37	양촌읍 일원
대곶면보건지소	김포시 대곶면 울생로 83-23	대곶면 일원
월곶면보건지소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63	월곶면 일원
하성면보건지소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 845	하성면 일원
학운리보건진료소	김포시 양촌읍 첫섬로 11	양촌읍 학운리, 유현리, 대포리
대벽리보건진료소	김포시 대곶면 수남로22번길 7	대곶면 대벽리, 대능리, 약암2리
송마리보건진료소	김포시 대곶면 송마로 30	대곶면 송마리, 대명리, 석정리, 신안리, 쇠암리, 약암1리
성동리보건진료소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로252번길 42	월곶면 성동리, 보구곶리, 용강리
개곡리보건진료소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455	월곶면 개곡·조강리, 통진읍 귀전리·고정리 하성면 가금2리~3리
마조리보건진료소	김포시 하성면 후평로 3	하성면 가금1리, 마조·시암·마근포리, 양택리, 후평리
석탄리보건진료소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166번길 10	하성면 석탄리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맑은물사업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클린도시사업소	김포시 초당로 40(장기동)	
도시안전정보센터	김포시 김포한강3로 326(장기동)	

[별표 3]

김포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1% 이내	6.5% 이내	24% 이내	34% 이내	30% 이내	4% 이상	0.4% 이내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2% 이내	88% 이상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이하
비 율	25% 이내	50% 이내	25% 이상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6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39	-				
정무직	소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소 계	1,600	-				
	2급	1	1				
	3·4급	1	1				
	4급	10	6	1	1	2	
	5급	75	44	2	8	7	14
	6급 이하	1,510	-				
	전문경력관	3	-				
별정직	소 계	6	-				
	5급 상당	1	-				
	6급상당 이하	5	-				
연구직	소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소 계	30	-				
	지도관	3			3		
	지도사	27	-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기준인력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1,639명 → 1,701명, 증 62명)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증가 : 3,267,950천원

- 증원 직급별 단가

(단위: 천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직(복수)
정 원	62	2	1	5	30	18	4	2
인건비	489,280	109,631	92,513	69,405	52,947	39,045	33,226	92,513
증가액	3,267,950	219,262	92,513	347,025	1,588,410	702,810	132,904	185,026

※ 기준인력 정원 증원에 따라 2025년 본예산 기준 직급별 비용추계서 작성, 잠정 추계로 직급별 변동 가능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3,267,950	3,365,989	3,466,968	3,570,977	3,678,107	17,349,991
인건비	소 계	3,267,950	3,365,989	3,466,968	3,570,977	3,678,107	17,349,991
	시 비	3,267,950	3,365,989	3,466,968	3,570,977	3,678,107	17,349,991

※ 공무원 인건비 인상·동결 등 감안하여 연 3% 인상 기준으로 작성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현원기준 인건비등과 상계처리)**

○ 예산과 협의 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총무과장 황규만 팀장 유승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3,267,950	3,365,989	3,466,968	3,570,977	3,678,107	17,349,991
인 건 비		3,267,950	3,365,989	3,466,968	3,570,977	3,678,107	17,349,991
재원 조달		3,267,950	3,365,989	3,466,968	3,570,977	3,678,107	17,349,991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267,950	3,365,989	3,466,968	3,570,977	3,678,107	17,349,991
	지방세수입	3,267,950	3,365,989	3,466,968	3,570,977	3,678,107	17,349,991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입법예고 의견 및 검토결과

제출자	주요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정보통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조제1항제5호 5. 스마트도시계획,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운영, <u>공간정보에 관한 사항</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간정보팀의 스마트도시과(현 도시안전정보센터) 이관에 따른 관련 서버의 관리 문제로 정보통신과 존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정보 서버 및 하드웨어 장비가 본청 정보관 내 위치하여 유지관리의 어려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도시과의 설립 취지와 스마트도시계획, ITS 등 4차산업의 도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u>공간정보의 스마트도시과 이관</u>은 필수적이며, 센터 내 현재 업무 방법처럼 출장 및 파견 등으로 수행가능할 것으로 사료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불수용&gt;</p>
경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자산관리과, <u>세정과, 취득세과</u>, 징수과, 민원여권과를 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정과, 취득세과 부서 명칭에 대한 의견으로 민원인의 혼란 최소화, 전체적인 대외적 업무 반영을 위해 <u>세정과, 취득재산세과</u>로 변경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원의 혼란 및 대외적 인지도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업무가 부서명에 반영되도록 제안하는 안 <u>‘취득재산세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u></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수용&gt;</p>
가족문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0조 중 “청소년, 상호문화 및 외국인 정책”을 <u>“가족지원, 다문화 지원”</u>으로 하며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 지원’의 용어 사용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의 방향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는 상호문화주의 용어를 사용하므로, ‘다문화’를 <u>‘상호문화’</u>로 변경 요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외국인 정책방향 및 사회통합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u>‘다문화 지원’ 대신 ‘상호문화’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u></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수용&gt;</p>
도시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1조(도시주택국)제2항제1호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 <u>군부대협외</u>, 지구단위 계획,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계획, <u>도시개발, 군사시설보호구역</u>, 지구단위 계획,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의 업무 분장 및 조정 <u>에 따라 도시개발, 군사시설보호구역</u>으로 수정 변경</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수용&gt;</p>
김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3조(도시주택국)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정조례안 제13조제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지원과 내 공장설</li> </ul>

제출자	주요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건축사회	2항제5호 중 공장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p>항제5호 중 개발행위, 건축농지전용, 산지전용, <u>공장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종합허가과에 존치</u></p> <p>- 인허가업무처리, 협의 설치 등을 단축하여 민원행정의 신뢰성·신속성 극대화</p>	<p>립허가와 관리의 일원화로 공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나, 원스톱허가 서비스의 운영 목적인 종합허가과의 취지와 민원인의 업무처리, 협의 등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u>공장설립허가 업무 존치</u></p> <p style="text-align: center;">〈수 용〉</p>

#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553호
----------	--------

제출년월일 2024. 11. .  
제출자 김포시장

## 1. 수정이유

- 의안번호 제3536호의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조의 별표 5 숫자의 일부 오기 사항을 조례개정안의 목적 및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별표 5의 직급별 정원 중 5급 정원을 본문에 맞게 수정함(안 제28조)
- 조직개편에 따른 5급 숫자의 기관별 정원 및 지도직 상계처리
  - 본 청 : 1실 6국 4담당관 40과 → 1실 8국 3담당관 45과(48개과 208팀)
  - 사업소 : 3개소 7과(26팀) → 2개소 6과(6과 22팀)

#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별표 5의 일반직의 5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76	48	2	6	6	14
----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미래전략국장”으로, “기획정책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②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미래전략국장”으로, “기획정책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③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7조 중 “기획정책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④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국장, 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중 “예산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⑤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으로, “기획정책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⑥ 김포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정책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 ⑦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 ⑧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미래전략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 ⑨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6조제2항 중 “클린도시사업소장”을 “공원도시사업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8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701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일반직	소계	1,660	-				
	2급	1	1				
	3·4급	1	1				
	4급	12	8	1	1	2	
	5급	76	48	2	6	6	14
	6급 이하	1,567	-				
	전문경력관	3	-				
별정직	소계	6	-				
	5급 상당	1	-				
	6급상당 이하	5	-				
연구직	소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소계	32	-				
	지도관	5			5		
	지도사	27	-				

### 〈수정안조문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8조 관련)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8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작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701	-				총 계		----	-					
정무직	소 계	1	-				정무직	소 계	--	-					
	시 장	1	1					시 장	--	--					
일반직	소 계	1,660	-				일반직	소 계	----	-					
	2급	1	1					2급	--	--					
	3·4급	1	1					3·4급	--	--					
	4급	12	8	1	1	2		4급	--	--	--	--	--		
	5급	76	<b>45</b>	2	<b>8</b>	<b>7</b>		14	5급	--	<b>48</b>	--	<b>6</b>	<b>6</b>	--
	6급 이하	1,567	-					6급 이하	----	-					
	전문경력관	3	-					전문경력관	--	-					
별정직	소 계	6	-				별정직	소 계	--	-					
	5급 상당	1	-					5급 상당	--	-					
	6급상당 이하	5	-					6급상당 이하	--	-					
연구직	소 계	2	-				연구직	소 계	--	-					
	연구관	-						연구관	-						
	연구사	2	-					연구사	--	-					
지도직	소 계	32	-				지도직	소 계	--	-					
	지도관	5			5			지도관	--			--			
	지도사	27	-					지도사	---	-					